

순천대학교 일반직공무원등성과급심사위원회규정

제 정 1995. 12. 18.

전문개정 1996. 6. 24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 및 교육부 예규 제241호에 의하여 순천대학교일반직공무원등성과급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·의결한다.

1. 특별상여수당 지급대상자 심사 선정
2. 특별상여수당 지급순위 결정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과 4급 이상 교직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 자로 구성한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제5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재심의) 총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의 제척) 위원 본인의 심사에 관하여 그 본인은 표결 및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.

제8조(심사기준) 이 위원회에서 심사할 기준은 따로 정한다.

제9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총무과 인사담당주무가 된다.

부 칙(1995. 12. 18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5. 6. 24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